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49호 2021. 10. 21.(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9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 1
- 사천시 고시 제30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 2
- 사천시 고시 제30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 3
- 사천시 고시 제30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 고시 - 4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1313호 소하천의 점용허가 공고 ----- 5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1330호 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6
- 사천시 공고 제1342호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4
- 사천시 공고 제1346호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 21
- 사천시 공고 제1349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0
- 사천시 공고 제1353호 사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41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49호

사천시 고시 제 2021 - 29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10. 21.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승인일자) : 제2021-10호(2021. 9. 28.)
2.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경상남도지사(수산자원과)
 - 주 소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3. 점용·사용의 목적(공사내용)
 - 경상남도 인공어초 설치사업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서포면 비토리 산46-17, 17-37, 14-7번지선
5.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 신고번호 : 제2021-9호
 - 공사기간 : 2021. 9. 30. ~2021. 11. 21.
6.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 2021. 9. 30.
7.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
 - 점용·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획 신고확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749호

사천시 고시 제 2021 - 30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10. 21.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승인일자) : 제2021-11호(2021. 9.28.)
2.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경상남도지사(수산자원과)
 - 주 소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3. 점용·사용의 목적(공사내용)
 - 경상남도 인공어초 설치사업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마도동 130번지선 일원
5.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 신고번호 : 제2021-10호
 - 공사기간 : 2021. 9. 30. ~2021. 11. 21.
6.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 2021. 9. 30.
7.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
 - 점용·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획 신고확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749호

사천시 고시 제 2021 - 30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10. 21.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승인일자) : 제2021-12호
2.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점용·사용의 목적(공사내용)
 - 영복항 어촌뉴딜 어선접안용 부잔교 설치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사천시 송포동 1526-1번지선
5.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 신고번호 : 제2021-11호
 - 공사기간 : 2021. 10. 14.~2022. 1. 31.
6.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 2021. 10. 14.
7.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
 - 점용·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획 신고확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749호

사천시 고시 제 2021 - 30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10. 21.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허가일자) : 제2020-13호 (2020. 10. 8.)
2.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관광진흥과장)
 - 주 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공사 내용
 - 해안둘레길 조성으로 볼거리 및 편익시설 제공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사천시 대방동 759번지선
5.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
 - 2021. 10. 12.

사 천 시 공 보

제749호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9.8>

소하천의 점용허가 공고

사천시 공고 제2021 - 1313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의 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사 천 시 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김성진		
	대표자 (성명)	김성진	주소	사천시 새고개길 1길 60
소하천명		좌룡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사천시 죽림동 254-4번지		
	면적	32.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1.10.21. ~ 2025.10.20.		
	목적 및 사유	건축물 건립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주차시설, 조경시설, 배수관로)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 및 관련서류 1부(건설과 비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사 천 시 공 보

제749호

사천시 공고 제2021-1330호

「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공포 2021.1.12., 시행 2022.1.13.)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의견제출 방법 및 의견검토 등 의견제출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다. 차별대우의 금지 및 비밀 준수의 의무 등(안 제9조 및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

사 천 시 공 보

제749호

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혁신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혁신법무담당관)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190, FAX : 831-6015)

사 천 시 공 보

제749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749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749호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 검토) ① 시장은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소관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749호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③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3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 표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해당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사 천 시 공 보

제749호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2022.1.13.시행]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9호

사천시 공고 제2021-1342호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헬스장 및 당구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헬스장 및 당구장 사용료 반영(안 별표1)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사 천 시 공 보

제 749 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우주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우주항공과장)

[(우)52539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우주항공과]

전화번호: 055)831-3056, 팩스번호: 055)831-6044]

사 천 시 공 보

제749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성명(단체명):

주 소: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749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시에 기부채납”을 “사천시에 기부채납”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시설의 관리) <u>시장</u>은 복지관의 체육시설, 회의실, 사무실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제4조(시설의 관리) <u>사천시장</u>(이하 “<u>시장</u>”이라 한다)----- ----- ----- -----.</p>
<p>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② (생략)</p> <p>③ 수탁자가 복지관에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u>시에 기부채납</u> 하여야 한다.</p> <p>④·⑤ (생략)</p>	<p>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사천시에 기부채납</u> ---- ---.</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16조(시행규칙) <u>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삭 제></p>

【별표 1】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구 분	사 용 료	비 고
대 강 당	○1일 1회: 30,000원	○1회: 2시간 이내 (1시간 초과 시 마다 20% 가산) ○평일 18:00이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20% 가산 ○동·하절기 냉·난방비: 1시간당 10,000원
소회의실	○1일 1회: 20,000원	
그 밖의 교육장 (직업교육장)	○1일 1회: 20,000원	○1회: 2시간 이내 (1시간 초과 시 마다 20% 가산) ○평일 18:00이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20% 가산 ○동·하절기 냉·난방비: 1시간당 10,000원
족구장 (배구장·농구장)	○조명사용료: 10,000원	○1회: 2시간
헬스장	○월 사용료: 40,000원	○1개월: 40,000원
당구장	○1회: 3,000원	○1회: 30분 (10분 초과 시 마다 1,000원 가산)

사 천 시 공 보

제749호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사 천 시 공 보

제749호

사천시 공고 제2021-1346호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어업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어업인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지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사 천 시 공 보

제749호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농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농축산과장)

(우편번호: 52538, 주소: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 전화: 831-3761, FAX : 831-6051)

사 천 시 공 보

제749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749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

사 천 시 공 보

제749호

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준수사항)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제시한 의무 이행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농어업인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어업인수당을 사천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다만, 사천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경상남도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749호

③ 그 밖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급신청 등) 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그 밖의 지급신청, 지급결정, 지원제외 대상, 지원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2.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이내
2.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 대표 4명 이내

사 천 시 공 보

제749호

3. 농어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에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9호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어업인수당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농어업인수당 최초 지급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9호

관 련 법 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5. 6. 22.>

□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7조(지급대상)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업인수당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수당은 경상남도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단, 경상남도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경상남도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③ 그 밖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9호

사천시 공고 제2021-1349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스키장 구성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상스키장 사용료 및 이용료 추가(안 제10조 관련 별표 1)

나. 이용권 및 회원권 구입 체육시설에 생활체육관, 수상스키장 추가
(안 제10조 및 제20조의2)

다. 납부한 체육시설 사용료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상계 처리(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

사 천 시 공 보

제749호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청(참조 : 문화체육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419,

FAX : 831-6013)

사 천 시 공 보

제749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749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국민체육센터를”을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 수상스키장을”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일자에 체육시설 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납부한 사용료를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제20조의2 중 “수영장과 국민체육센터”를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 수상스키장”으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 14. (생략)</p> <p>제10조(사용료)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영장, <u>국민체육센터</u>를 이용할 때에는 이용권을 구입하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p>제19조(사용료의 반환) ① <u>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u></p> <p>1. ~ 3.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20조의2(회원권) 시장은 <u>수영장과 국민체육센터</u>의 상시 이용자</p>	<p>제2조(정의) ----- ----- <u>뜻은 다음과</u> ----- ----.</p> <p>1. ~ 14. (현행과 같음)</p> <p>제10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 수상스키장</u>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9조(사용료의 반환)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일자에 체육시설 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납부한 사용료를 상계(相計)할 수 있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0조의2(회원권) ---- <u>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 수</u></p>

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스키장-----

-----.

<삭 제>

[별표 1]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1. 기본사용료

구분 시설별	시 기	사용구분	기 본	사 용 료(원)		비 고	
				평 일	휴 일 (토요일포함)		
사천.삼천포 체육관, 사천시유도체육관	조기	체육경기	1회(일)	12,000	15,000		
		체육이외	1회(일)	20,000	30,000		
	주간	체육경기	1회(일)	50,000	60,000		
		체육이외	1회(일)	80,000	120,000		
	야간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체육이외	1회(일)	40,000	50,000		
사주체육관 삼천포보조체육관 (부대시설 제외)	조기	체육경기	1회(일)	6,000	7,000		
		체육이외	1회(일)	10,000	15,000		
	주간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체육이외	1회(일)	40,000	60,000		
	야간	체육경기	1회(일)	9,000	12,000		
		체육이외	1회(일)	25,000	35,000		
삼천포 생활체육관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30,000	40,000	탁구장, 당구장 개별 적용	
사천.삼천포 종합운동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120,000	150,000		
		체육이외	1회(3시간)	160,000	250,000		
수영장	1일	체육경기	1회(일)	300,000	500,000		
		체육이외	1회(일)	500,000	800,000		
읍면동지역 축구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80,000	100,000		
		체육이외	1회(3시간)	100,000	150,000		
사등야구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30,000	50,000		
공 도 장	1일(1사대)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인공암벽장	1일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풋 살 구 장	1일	체육경기	1회(2시간)	20,000	25,000		
족 구 장	1일	체육경기	1회(2시간)	20,000	25,000		
테니스장	개인	인조 마사	체육경기	1회 2시간 1면당	7,000	8,000	※ 단 체 는 같은 동호 회나 같은 소속의 구 성원이 10명 이상인 경 우에 적용
			"	"	5,000	6,000	
	단체	인조 마사	체육경기	1회 2시간 / 3면당	20,000	30,000	
			체육경기	1회 2시간 / 3면당	10,000	15,000	
수상스키장	1일	체육경기	1회(일)	200,000	300,000	유류비, 드라이버 비용 별도	

※ 수상스키장 사용료는 제18조에 따른 감면 적용 제외

2. 전용사용료(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축구장 등 대관 체육시설 구장별 적용)

사용시간별	사 용 료	비 고
연 20회 이내	○ 기본사용료 × 사용 횟수	
연 20회 초과	○ 기본사용료 × 초과 횟수 × 0.9	10% 할인
연 30회 초과	○ 기본사용료 × 초과 횟수 × 0.8	20% 할인

3. 연습사용료

시 설 별	구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체육관	개인	1회 2시간	1,0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단체	1회 2시간	1명당 8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종합운동장	단체	1회 2시간	1명당 8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궁도장	개인	1회 2시간	2,000원	1사대 기준
	단체	1회 2시간	1명당 800원	1사대 기준
인공암벽장	개인	1회 2시간	1,000원	
	단체	1회 2시간	1명당 500원	

※ 단체연습 :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4.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앰프시설	1일 1회 (8시간내)	20,000원	종합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동일 적용
전기 및 조명	kw	기본료+실제사용료	기본료 10,000원
냉·난방	1일	기본료+실제사용료	기본료 30,000원

5. 수영장 이용료

구 분	이용자	개인(원)	단체(원)	비 고
개 인	일반인	4,000	3,500	○ 이용시간 2시간 ○ 단체 30명 이상 ○ 회원권 매월기준
	군인, 학생	3,500	3,000	
	어린이, 경로대상	3,000	2,500	
선수훈련	일반인	2,000		
	군인, 학생	1,500		
	어린이, 경로대상	1,000		
회 원	일반인	60,000		

	군인, 학생	50,000		
	어린이, 경로대상	40,000		
	체력단련실이용	10,000		
	월 강습료	10,000		
수영복 대여료	수모	1,000		
	수경	1,000		
	수영복	2,000		

6.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단위: 원)

시설별	월 회 원(일반인)		수시이용료 (일반인)	비고
	개인	단체		
실내체육관	30,000	20,000	2,000	단체는 10명 이상
다목적실	30,000	20,000	2,000	
에어로빅장	30,000	20,000	2,000	
탁구장	30,000	20,000	2,000	
헬스장	35,000	25,000	2,500	

- 이용시간 : 1명 당 1회 2시간
- 단체는 같은 동호회나 같은 소속의 구성원을 말함
- 월 회원 매월 기준
- 사천시 거주자 우선

7. 삼천포 생활체육관 이용료

(단위: 원)

시설별	월 회 원(일반인)		수시이용료 (일반인)	비고
	개인	단체		
탁구장	40,000	30,000	3,000	1명/2시간
당구장	-	-	1,200원	1테이블/10분

- 단체는 10명 이상
- 단체는 같은 동호회나 같은 소속의 구성원을 말함
- 월 회원 매월 기준
- 사천시 거주자 우선

8. 수상스키장 이용료

종목별 이용료

(단위: 원)

종목	월회원		수시 이용료		비고
	개인	단체	1회 이용료	1회 강습료	
웨이크보드	100,000	90,000	11,000	40,000	단체는 10명 이상
수상스키	100,000	90,000	11,000	40,000	
웨이크서핑	100,000	90,000	22,000	-	

※ 단체는 같은 동호회나 같은 소속의 구성원을 말함

※ 수상스키장 이용료는 제18조에 따른 감면 적용 제외
(단, 사천시민은 1회 이용료 10% 할인)

월회원 이용횟수

구 분		횟수	비 고
아웃보트	일반회원	10회	사천시민 1회 추가
	경상남도 수상스키 웨이크보드협회 등록 선수, 학생, 지도자	14회	
	경상남도 도대표 선수	18회	
매직보트	일반회원	8회	사천시민 1회 추가
	경상남도 수상스키 웨이크보드협회 등록 선수, 학생, 지도자	10회	
	경상남도 도대표 선수	12회	
인보트	일반회원	5회	사천시민 1회 추가
	경상남도 수상스키 웨이크보드협회 등록 선수, 학생, 지도자	7회	
	경상남도 도대표 선수	8회	

9. 중계 방송료

종 별	기 준	요 액	비 고
텔레비전 중계	1일	20,000원	○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라디오 중계	1일	10,000원	
녹화 또는 녹음	1일	중계방송료의 반액	

10.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 사용료

종 류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선전 또는 광고물의 게시	게시면적 1㎡당(월액) 1등급 2등급	8,000원 6,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미만은 1㎡로 한다. ○ 15일 미만은 2분의 1개월로 한다. ○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 1등급: 본부석 정면 위주로 한다. ○ 2등급: 본부석 중심으로 좌우 위치로 한다.
애드벌룬 및 유사물 계양 에 의한 행위	1일 1개	3,000원	

사 천 시 공 보

제749호

사천시 공고 제2021-1353호

「사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필수위임사항을 포함한 개정조항이 2021. 6. 23.자로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사천시 보행안전편의 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사 천 시 공 보

제 749 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도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도로과장)

[(우)52539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도로과)

전화번호: 055)831-3383, 팩스번호: 055)831-6037]

사 천 시 공 보

제749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성명(단체명):

주 소: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749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천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사천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3조(재정지원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9호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정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749호

관 련 법 규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등의 소속으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14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①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 지구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불법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사 천 시 공 보

제749호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법시설물의 정비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할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불법시설물을 정비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불법시설물의 정비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의 3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9호

③ 지역위원회 위원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22.]